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살아가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 8. 10.(수) 11:00 8. 11.(목) 조간	배포 일시	2022. 8. 10.(수) 09:00
담당 부서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책임자	과 장 조경규 (054-912-0150)
		담당자	사무관 최수정 (054-912-0168)

국립종자원, 적법한 마늘 종구(씨마늘) 사용 캠페인 실시

-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주산지 중심으로 홍보 -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본격적인 마늘 종구(씨마늘) 유통시기*를 맞아 8월 18일~19일까지(2일간) 마늘 주산지(충남 서산시, 경북 영천군, 경남 창원군)를 중심으로 (사)한국마늘연합회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적법한 마늘 종구 사용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

* 마늘 파종 시기: (난지형) 8월 하순~9월 하순, (한지형) 10월 중하순

종자업 미등록 업체 및 품종의 생산·판매 미신고 업체에서 구입한 마늘 종구 사용으로 발아 불량 및 생육 불량, 품질 저하 등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판매업체와의 분쟁에 따른 원인 규명, 피해보상 협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국립종자원에서는 불법 마늘 종구 사용에 따른 농업인 피해 예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적법한 종자 사용 등에 대해 홍보하고 올바른 마늘 종구 사용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한다.

농업인은 마늘 종구를 구입할 때에는 품질표시사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종자 결합에 의한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구매 내역(영수증 등), 사진 등 증거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마늘 종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는 종자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와 마늘 종구의 품질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마늘 종구 뿐만 아니라 종자를 구입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립종자원에 상담(☎ 054-912-0168~0170)을 요청할 수 있다.

국립종자원 조경규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종자·묘(모종)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여 유통 질서를 바로잡고, 피해 농업인의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한 종자 분쟁 서비스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며, 불법 종구가 의심될 때는 국립종자원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마늘 종구(씨마늘) 유통제도 안내서



마늘 종자(종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면 ?



- 시·군에 '종자업 등록'(채소)을 하여야 합니다.
- 국립종자원에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하여야 합니다.
- 판매할 때에는 '품질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1 종자업 등록

마늘 종자(종구)를 생산하여 판매하려면 시설기준(철재하우스 330m² 이상, 육종포장 3,000m² 이상)을 갖추어 주 생산시설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종자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종자업'이란 종자를 생산·가공 또는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

2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면 품종별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	신고문의
우편/방문/온라인 www.seed.go.kr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 054-912-0115

3 유통종자의 품질 표시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품질표시를 하여야 함.

품질표시 사항	품질표시 바른 예
① 품종의 명칭 ② 포장 당 무게 또는 개수 ③ 종자업 등록번호 ④ 품종 생산·수입 판매 신고번호 또는 품종보호 출원등록번호 ⑤ 종자의 생산 연도 또는 포장 연월 ⑥ 재배 시 특히 주의할 사항 등	

4 벌칙·과태료 등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등록 종자·육묘업자(종자산업법 제37조)
-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종자산업법 제38조 위반)
- 수입정응성시험 미필 종자 수입 판매(종자산업법 제41조 위반)
- 보증을 받지 아니하고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종자산업법 제36조 위반)

종자산업법 위반 주요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과태료(단위: 만원)				
	1회	2회	3회	4회	5회이상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 및 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종자산업법 제43조 위반)	100	300	500	700	1,000
발아보증시험이 지난 종자,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종자 및 묘를 진열·보관한 경우 (종자산업법 제44조 위반)	10	30	50	70	100
출입, 조사·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종자산업법 제45조 위반)	100	300	500	700	1,000

종자산업법 위반 주요 행정처분

위반행위	과태료 (단위: 만원)		
	1회	2회	3회이상
신고하지 않은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종자산업법 제38조 위반)	영업정지 90일	영업정지 180일	등록 취소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종자 또는 묘를 판매·보급한 경우 (종자산업법 제43조 위반)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30일	영업정지 60일
수입정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외국산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종자산업법 제41조 위반)	영업정지 90일	영업정지 180일	등록 취소